

## I. 序 論

- 지난 '97년도말 IMF사태과 함께 시작된 금융산업 구조조정으로 '99년 상반기까지 전체 금융권내 총 2,000여개의 금융기관중 약 10% 수준인 2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퇴출·정리되었음.
  - 이에 따라 은행, 제2금융권의 부실기관 정리에 소요된 구조조정 비용이 公的資金<sup>1)</sup>을 포함하여 약 60조원을 상회하고 있음.
  - 또한 '99년 하반기부터 제2차 금융산업 구조조정, 즉 보험사 및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자금지원외에, 은행권의 추가 손실보전 등 아직도 구조조정이 지속중임.
  -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여부 및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하여 정부 (예금보험공사 등) 및 각 금융기관, 일반소비자 등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.
  
- 최근에는 현행 통합 예금보험제도<sup>2)</sup> 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 운용의 현실화를 위한 조치가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  - 특히 최근에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장치가 도입되었음.<sup>3)</sup>

---

1) 금융부실 해소를 위해 무자본특수법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정부출자기관인 성업공사가 채권(3~7년만기)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임. 정부보증이기 때문에 국가채무이며 국회동기가 필요하지만, 전액 정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관리기금과는 다름. '99년 10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채권 43조5천억, 성업공사(부실채권 정리기금) 채권 20조5천억원 등 64조원이 발행되었음.

2) 최초의 공식적인 예금보험은 1892년 은행권과 예금의 안전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설립된 뉴욕주의 안전기금제도(safety fund banking system)이 최초임.

3) 파산 및 부실우려 금융기관,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해당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한 배상책임, 즉 손해배상 소송을 예금보험공사등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음. 실제로 금번 '99.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

-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시 예금보험제도의 보험료 사전각출제 방식 이외에 추가적인 사후각출제를 신규 도입할 예정임.
-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예금자보호법 개정중 주요 사항은 금융업종간 차단벽(FireWall) 설치와 신용등급에 의한 예금보험료율의 차별화, 특별보험료 도입 등으로 요약됨.
  - 각 금융업종별로 Fire Wall을 설치하여 타금융업종간의 예금보험료 및 보험금 운용 등 자금유출입의 분리화를 적극 추진함.
  - 동일 금융업종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별화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(差等保險料率制度)를 도입함.
  -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현재의 사전납부제도 이외에 사후적인 특별보험료 징수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.
- 본보고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시 미치게 될 파급영향과 관련하여,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그 영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장치 및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  - 첫째, 국내외 예금자보호장치 (예금보험제도)의 현황 및 특징
  - 둘째, 외국의 보험산업 계약자보호장치 제도의 운용 및 주요 특징
  - 셋째, 예금자보호법 개정시 보험산업의 파급영향 및 대책으로서 i)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검토 ii) 걱정 예금보험료율의 제시, iii) 보험료 납부방식의 개선방안, iv) 보험계약자 권익보호 및 보험산업을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, 향후 관련 정책추진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.

---

의 신설조항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(제21조의 2), 자료제공의 요청(제21조의 3), 예금보험료관련 부보금융기관의 비밀유지의무 (제30조의 2), 관리인의 의무(제35조의 7), 청산인 또는 파산관리인의 업무(제35조의 8),채권양도의 특례(제38조의 3) 등임.